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석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1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강석주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구미경,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성연, 박춘선,
봉양순, 서상열, 신복자,
오금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종복,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정준호,
채수지,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32명)

1. 제안이유

- 현행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인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의 금연구역이 실내로 한정되어 있어,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인근 실외 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강화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함.
- 이에 해당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실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 금연교육 및 홍보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청소년 흡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아울러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과 정합성을 높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담배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2호 및 제6항에 규정됨에 따라 삭제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 다. 키즈카페,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6호)
-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의 규정됨에 따라 삭제함(안 제5조제1항제8호)
- 마.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단서조항 삭제(안 제8조제1항)
- 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내 금연교육 및 홍보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및 「아동복지법」 등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서울형 키즈카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6.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인 키움센터 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연교육을 지원”을 “금연교육 및 홍보를 지원”으로, “금연교육을 실시”를 “금연교육 및 홍보를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를 “법 제9조의5”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해서는 유관 공공기관 등의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를 “법 제9조의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u><신 설></u></p> <p>1. ~ 3.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를 따른다.</p> <p>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p>
<p>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한다.</p>	<p>제3조(조례의 범위) -----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 -----.</p>
<p>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p> <p>②·③ (생 략)</p>	<p>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 ----- ----- -----.</p>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3. (생략)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신설>

1. -----

----- 말한다)

2. 3. (현행과 같음)

<삭제>

5.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서울형 키즈카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6.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인 키움센터 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5. ~ 7. (생략)

8.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9. (생략)

② ~ ④ (생략)

⑤ 시장이 제1항제4호부터 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장소와 제8호의 장소 중 가스충전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③ (생략)

제9조(금연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7. ~ 10.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삭제>

11.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

-----, <단서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금연환경의 조성) ① ----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② ~ ④ (생략)

⑤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2(금연지도원)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 금연교육 및 홍보를 지원-----

----- 금연교육 및 홍보를 실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해서는 유관 공공기관 등의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⑥ ----- 법 제9조의5 -----

-----.

제9조의2(금연지도원) ① -----
법 제9조의5-----

-----.

② ~ ⑦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항제4호 및 제5호	○	금연구역 추가지정(서울형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에 의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노면표시재+안내판) 설치비 발생 ⇒ 총 13,834천원 소요(추계기간 동안 1회만 발생)

※ 흡연단속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서울시 재정부담¹⁾은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비용 등(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나. 전제

- (표지판) 2024년 지하철역 출입구·중앙차로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비용(P)²⁾ 활용
⇒ 장소별 ① 노면표시재(9,960원), ② 안내판(8,217원) 각각 1개 설치 가정
- (설치장소) 서울형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등 총 761개소(Q) 설치³⁾를 전제
⇒ 서울형 키즈카페 76개소, 지역아동센터 413개소, 키움센터 272개소 가정
- (발생기간) 2026년부터 비용 발생, 일회성 발생 전제
- (미고려) 지정 및 설치가능 여부, 자치구와의 재정부담 여부, 물가상승률 미반영 등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라. 방법

- (논의추계) 서울시 시민건강국 문의 및 2024년 금연구역 안내표지 정비 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추계

1) [자치구 단속부분]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흡연단속 인력 및 재정부담은 현재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서울시 재정지출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과거사례 고려] 2024년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추진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추계함
⇒ 노면표시재는 규격 400×150의 알루미늄 재질이며, 금연구역 안내판은 규격 600×400의 포맥스2t 재질을 전제

3) [현황자료 고려] 각종 통계자료 및 서울시 관련부서 유선문의 정보를 토대로 설치장소 전제

①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서울형 키즈카페 시설현황 정보기준 76개소

② (지역아동센터) 서울시 여성가족실 관련부서(아동담당관) 유선문의 결과 413개소(2025. 7월 기준)

③ (키움센터) 서울시 여성가족실 관련부서(아이돌봄담당관) 유선문의 결과 키움센터 272개소

※ 장소 특성에 따라 안내표지판 설치가 불가능한 곳도 있을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현황 자료를 토대로 단순가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13,834천원(추계기간 동안 1회만 발생)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비용(안 재5조제항제4호 및 5호)	13,834	-	-	-	-	13,834
	소계(a)	13,834	-	-	-	-	13,834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13,834	-	-	-	-	13,834

주 : 향후 금연구역 지정(서울시 지정·부담)을 전제하여 추계한 금액임

4. 덧붙이는 의견

○ 해당 금액은 서울시 차원의 지정 및 부담을 전제하여 추계하였으므로, 향후 실제 사업추진 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지출요인에 의해 실소요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① [금연구역 지정여부] 시 지정여부에 따라 재정부담 상이

- 문의결과 **금연구역 지정**⁴⁾은 재량규정이므로 구역 지정 시 이에 따른 재정적, 행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나, 서울시는 현재 흡연구역 단속인력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⁵⁾ 있으며, 이에 흡연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자치구의 협조**⁶⁾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므로 시 차원에서 별도로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에는 일부 부담(추가로 구역 지정 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업무, 민원 등의 문제)이 있기에 해당 규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금연구역이 추가로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② [정비관련 재정부담] 추후 표지판 정비관리 주체 관련 자치구와의 재정부담 문제

- 이례적으로 시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정비관리 주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부담여부**⁷⁾가 달라질 수 있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4) [규정에 의한 파급효과 발생가능성 검토] 금연관련 서울시 조례는 각 자치구 조례 제·개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이드라인적 기능을 하기도 하므로 해당 안건이 자치구 조례 및 제정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규정에 의한 파급효과)은 있을 수 있음
- 5) [자치구로 해당업무 사무위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징수를 자치구(구청장)로 사무위임한 상태임
- 6) [향후 심도있는 논의 필요] 특히 재정부담에 따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7) [서울시 일회성 부담 가정]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시 지정의 경우에도 현재 자치구에서 표지판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사안도 최초 설치비용(최초 설치 시 서울시 부담, 이후 자치구와 협의가정)만을 추계하였으나, 향후 표지판 정비와 관련하여 부담주체가 달라질 경우 실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음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비용 등(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13,834천원(추계기간 동안 1회만 발생)
= 노면표시재 구매 비용 + 금연구역 안내판 구매 비용
= 7,580천원 + 6,254천원

나. 세부 항목별 비용

① 노면표시재 구매 비용(1차년도만 발생)

= 7,580천원⁸⁾
= 노면표시재 단가(P) × 설치장소(Q)
= 9,960원 × 761개

② 금연구역 안내판 구매 비용(1차년도만 발생)

= 6,254천원⁹⁾
= 금연구역 안내판 단가(P) × 설치장소(Q)
= 8,217원 × 761개

8) [단위변경에 따른 단수조정 유의] 7,579,560원이나 절상하여 7,580천원으로 작성(「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

9) [단위변경에 따른 단수조정 유의] 6,253,137원이나 절상하여 6,254천원으로 작성(「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